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의 투기 금지 근거 마련〉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08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의 투기 금지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5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큼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킵니다. 풍향을 고려해 날려 보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집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일대에서 수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상습적 쓰레기 투기행위’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온 손님일 뿐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의2·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의 투기 금지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2호의2),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공중에 유입·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며(안 제8조제4항),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이란 쓰레기 또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불문하고 풍선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유입·투기되는 것으로서 공중 비산에 따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u>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 기물을 공중에 유입·투기하여 서는 아니된다.</u>
제68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신 설> 3. ~ 14. (생 략) ④ (생 략)	제6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자</u> 3.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제1호¹⁾는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될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8조²⁾는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68조제3항제1호³⁾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3)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의 규정에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추가하여 ‘쓰레기 또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불문하고 풍선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유입·투기되는 것으로서 공중 비산에 따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비산위험 공중 폐기물의 공중 유입·투기 금지 의무 및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접경지역 일대 산지에서 대북전단이 수거되는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동 개정안은 공공의 안전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환경부는 현행 법률상 폐기물은 모든 장소를 포괄하여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성상, 배출상황, 통상의 취급형태, 거래가치의 유무 및 배출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둘째, 법무부는 개정안의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정의는 ‘공중 비산’, ‘오염·피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규제 범위를 예상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의

소지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⁴⁾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으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광고지 배포 행위 등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⁵⁾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에 적용·규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부 및 통일부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

4) 헌법재판소 판례(2020헌마 1724등, 2023.9.26. 선고)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심판 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한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며,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제지하거나 사전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일괄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한 바 있음.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